청렴韓세상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2014. 12.

【2014년도】

대규모공사장 추진상황 점검결과

◈ 점검대상 : **총 18건** (10억원 이상 공사 중인 사업장)
◈ 점검기간 : 2014. 11. 24. ~ 12. 5. (2주간)
◈ 점검결과

구 분	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현지조치	
지적건수	12	5	-	7	2건 / 8,157천원

아 산 시

아 산 시 장
〔감 사 담 당 관〕

서로가 신뢰하는 청렴한 아산, 클린 아산

【2014년도】

대규모공사장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Ⅰ 점검실시 개요

점검배경 및 목적

◈ 우리시 주요 정책 및 기반시설 사업 중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 및 공사 시공실태 등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 부실시공 가능성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유도**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18건 (10억원 이상 공사 중인 사업장)

○ 점검기간 : 2014. 11. 24. ~ 12. 5. (2주간)

○ 점검인원 : 4명 (기술감사팀장 외 3명)

※ 2014. 7. 7. ~ 7. 11.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대규모건설공사 특정감사」와 감사대상 중복으로 수감부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간소하게 점검

[참고]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처분결과

연번	주 요 내 용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계	5건	주의1, 시정 4	감액 71,769	훈계 7	
1	계약(재정)심사 결과 업무추진 소홀	주의	-	훈계 2	
2	행정절차 이행 소홀	시정	-	훈계 1	
3	행정절차 미이행 및 책임감리용역 대가 조정 소홀	시정	감액 10,380	훈계 1	
4	시공감리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61,389	훈계 1	
5	건설현장 지도·감독 소홀	시정	-	훈계 2	

▣ 점검중점사항

○ 각종 법규준수 및 행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 분야별 계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 업무처리 적정성

○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실태

○ 관련서류 점검 및 현장관리 실태

II 점검대상

연번	사 업 명	부 서	비고
1	배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안전총괄담당관	
2	모종시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체육육성과	
3	2014 아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공사	기업지원과	
4	아산시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건설공사	자원순환과	
5	은행나무길 농촌테마가로공원 조성사업	산림녹지과	
6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건설과	
7	곡교천(지방하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건설과	
8	외암대로(대로3-5호) 확포장공사	도로과	
9	영동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과	
10	둔포신협-둔포산단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과	
11	용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정책과	
12	배방월천지구 대로2-2호선 개설공사	개발정책과	
13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동서축 도로개설공사	신도시지원과	
14	아산탕정 DC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신도시지원과	
15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신도시지원과	
16	갈매배수지 증설공사	상수도과	
17	용화 송수가압장 설치공사	상수도과	
18	아산시 도고선장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과	

III 점검결과

▣ 행정상 조치

(단위 : 건)

지 적 사 항					제도개선	수범사례
계	시정	주의	개선	현지조치		
12	5	-	-	7	-	-

▣ 재정상 조치

(단위 : 건 / 천원)

계	회 수	감 액	재시공	비 고
2 / 8,157	/	2 / 8,157	/	

▣ 신분상 조치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 계	주 의
-	-	-	-	-

※ 점검결과 사례전파 이후 동일 지적사항 발생 시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

※ 금번 적발된 담당자 향후 재적발 시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

IV 세부지적사항

1. 건축물 인·허가 관련

○「건축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지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 그러함에도, 사업부서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와 협의(인·허가)를 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

2. 예비준공검사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12조에는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의 사업은 준공검사 전(1개월 전 이상)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 및「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제55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함.

○ 그러함에도, 사업부서에서는 준공검사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3. 가설건축물 축소설치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 및「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함.

○ 또한,「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함에도,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가설건축물 중 일부만 설치하였음에도 감액을 위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4. 현장대리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제15조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허락할 수 있음.

○ 그러함에도, 사업부서에서는 현장대리인이 사내 교육연수에 참석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현장 이탈 승인 요청 및 발주자의 승인 절차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건설기술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5. 품질관리 및 자재관리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자 및 건설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

○ 그러함에도, 사업부서에서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았으나 승인하지 않았으며, 품질시험·검사대장, 주요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및 자재관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6. 공정관리 관련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를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에는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는 등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그러함에도, 사업부서에서는 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5%이상 지연되어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정관리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7. 설계서 및 예정가격 관련

○ 설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종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함에도, 사업부서에서는 설계검토를 소홀히 하여 일부 공정이 관련 기준에 미달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그 공정이 일위대가에 의해 산정된 단가보다 높은 견적단가를 적용하는 등 설계서 및 예정가격 검토를 소홀히 함.

8. 순환골재 재활용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사구간 1㎞이상 또는 포장면적 9,000㎡이상 도로공사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사업 등의 공사 추진 시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Ⅵ(순환골재 재활용 기준)에 따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사업인 경우 기초다짐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으로 골재소요량 중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2012년 까지는 15%이상, 2013년은 25%이상, 2014년은 30%이상, 2015년은 35%이상, 2016년부터는 40%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시·도지사(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에 의하여 아산시장에게 위임)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러함에도, 사업부서에서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임에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함.

Ⅴ 기타 지적사항

연번	지 적 내 용	비 고
1	▪ 순수한 목재만 연료용으로 사용하고, 생활폐기물을 태우거나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 ▪ 건설폐기물에 폿말 및 덮개 설치하여 분리 보관	**현지조치**
2	▪ 공사구간 1구간~2구간의 수도관 매설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되니 현장 여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철저	**현지조치**
3	▪ ○○○○공단은 도급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현장관리 철저	**현지조치**
4	▪ 현장에 방치된 공사안내표지판 견고하게 설치 ▪ 공사중지 기간에 일반인 출입통제 할 수 있도록 안전휀스 등 설치 및 현장 정리 철저	**현지조치**
5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현장에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조속히 처리	**현지조치**
6	▪ ○○교 신축줄눈 시공지점 인근 건설폐기물 조속히 처리	**현지조치**
7	▪ 건설폐기물 처리 시 과적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현지조치**